

법학전문대학원학생지도센터운영내규

<제정 2010.8.1>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 및 상담을 통하여 학업외적인 지원을 강화하고,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·운영하기 위한 학생지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기능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 및 기능) 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
1. 학생지도 교수제 운영
2. 학업상담 및 지도
3. 진로상담 및 지도
4. 심리상담 및 조사
5. 인성지도 및 상담
6. 취업상담 및 지원
7. 생활상담 및 지원
8.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부여하는 정책과제 수행

제3조(센터장) ①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가운데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.

제4조(센터직원) ①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센터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직원의 임용은 본교 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전문연구원) ①센터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전문연구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③전문연구원은 관련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한다.

④전문연구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조교)①센터에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센터 조교 임용은 본교 조교임용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운영)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